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1 월26일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김 명 곤

●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금고”를 “제23조의 규
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
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5조 단서 중 “제14조제3호”를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4조제6호”를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절의 제목 “영화진흥금고”를 “영화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
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영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의 제목 “(금고의 용도)”를 “(기금의 용도)”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는”을 “기금은”으로 하며, 동항제7호 중 “의
결한 사업”을 “의결한 사업 지원”으로 하여 이를 제12호로 하고, 동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

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제2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12호”로, “금고의”를 “기금의”로, “금고 집행 액수”를 “기금 집행 액수”로 한다.

제3절에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관할 소방서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영화상영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 재배농가수, 보험실시 효과, 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1월26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박홍수**

●**법률 제8281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